소음 · 진동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음 · 진동]

『소음 · 진동』 콘텐츠는 소음 · 진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인 분쟁조정 제도와 환경쟁송 제도에 관한 내용과 층간소음, 생활(공사장 및 사업장 등)소음 · 진동, 이동소음, 집회 · 시위소음, 선거소음, 교통소음 · 진동, 자동차 소음 · 진동, 항공기 소음, 공장 소음으로 분류된 소음 · 진동의 규제기준과 위반 시 제재, 피해대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합니다.

소음 · 진동 1
1. 소음·진동 피해 4
1.1. 소음·진동 피해 발생 4
1.1.1. 소음·진동 피해 알아보기 4
1.2. 소음·진동 피해 구제 방법 6
1.2.1. 분쟁조정 6
1.2.2. 환경쟁송 12
2. 소음·진동 규제 17
2.1. 공동주택 소음 17
2.1.1. 층간소음 17
2.2. 생활 주변 소음·진동 20
2.2.1. 생활(공사장 및 사업장 등)소음·진동 20
2.2.2. 이동소음 24
2.2.3. 집회·시위소음 및 선거소음 25
2.3. 교통 소음·진동 28
2.3.1. 교통소음·진동 28
2.3.2. 자동차 소음·진동 30
2.3.3. 항공기 소음 32
2.4. 공장 소음·진동 35
2.4.1. 공장(배출시설) 소음·진동 35

1. 소음·진동 피해

1.1. 소음·진동 피해 발생

1.1.1. 소음·진동 피해 알아보기

"소음·진동"의 이해

"소음·진동"이란?

▪ "소음"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다음의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 다음의 사업장
  - √ 노래연습장업(「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 √ 신고 체육시설업(「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 중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 √ 학원 및 교습소(「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 √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
  - √ 콜라텍업(「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

▪ "진동"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2호).

> ※ **사례별 소음의 크기**

소음원	수준(dB(A))
사람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수준, 고통 임계값	120
락 콘서트	110
지나가는 지하철 열차	100
15m 거리에서 지나가는 대형트럭이나 버스	90
도시교통	80
15m 거리에서 지나가는 자동차	70
일반적인 대화 소리	60
교실 안	50
야간의 교외지역	40
야간에 침실에서 들리는 소리	30
방송 스튜디오	20
나뭇잎 소리	10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수준, 가청 임계값	0

[출처: 국가소음정보시스템(http://www.noiseinfo.or.kr) 정보마당-소음이란?-소음의 영향]

소음·진동의 종류

▪ 소음·진동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며, **층간소음, 사업장 및 공사장 등의 생활소음·진동, 교통소음·진동, 항공기 소음·진동, 공장 소음·진동**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7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6조 및 제39조 참조).

소음·진동 피해 사례

소음·진동 피해

▪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의 피해 사례는 다음의 경우 등이 있습니다.

(층간소음) 아파트 위층에서 늦은 저녁시간마다 피아노를 치는 소리, 청소기를 사용하는 소리 때문에 이웃 간 분쟁이 있음

(공사장 소음·진동) 집근처 아파트 재개발 지구의 공사장에서 발파작업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소음이 발생함

(사업장 소음·진동) 보습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같은 건물 헬스장 스피커에서 들리는 과도한 노래소리와 진동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음

(이동소음) 길가에 정차되어 있는 과일 판매 트럭에서 들리는 확성기 소음

(선거소음) 국회의원 선거기간에 후보자 홍보를 위해 옥외확성기를 사용하여 소음을 발생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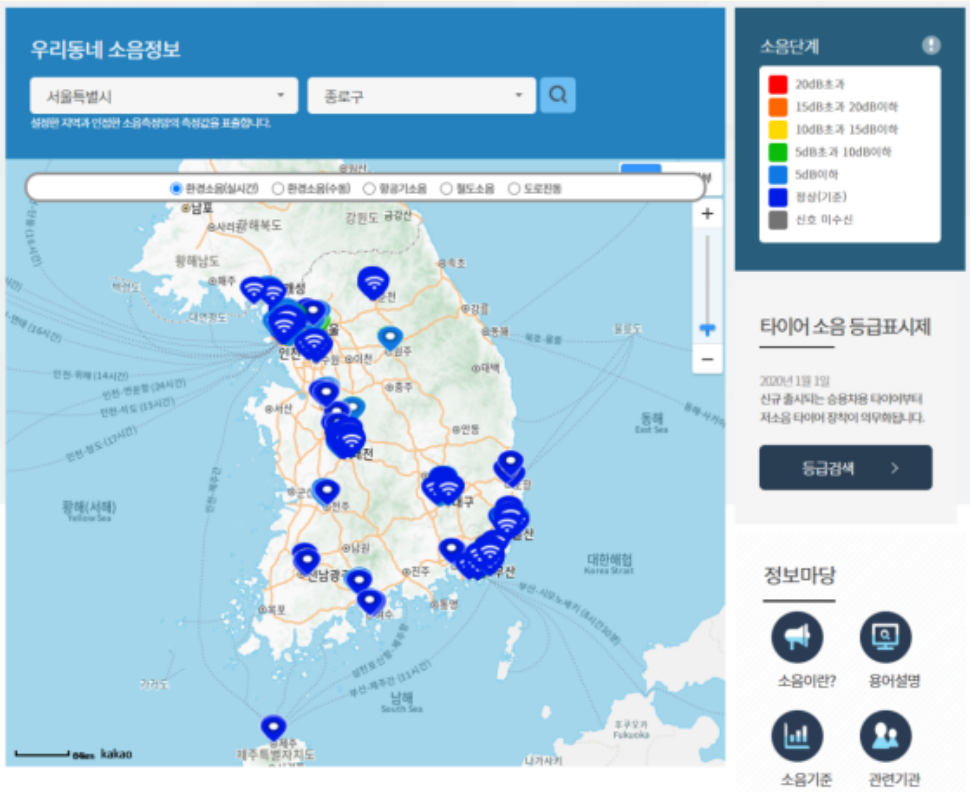
(교통 소음·진동) 주택단지 인근에 고속철도가 추가로 건설되면서 소음이 증폭됨

(이륜자동차 소음) 소음기를 튜닝하여 과도한 배기소음이 발생하는 오토바이들로 인해 주택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함

[출처: 『소음·진동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 참조]

※ 우리 동네 소음·진동 정보가 궁금하다면?

- 국가소음정보시스템(http://www.noiseinfo.or.kr)에서 소음·진동 측정망의 위치와 측정값, 실시간 소음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소음정보시스템(http://www.noiseinfo.or.kr)]

1.2. 소음·진동 피해 구제 방법

1.2.1. 분쟁조정

분쟁조정(調整) 제도

분쟁의 조정

▪ 소음·진동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기관(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제도를 이용하여 분쟁 당사자 간에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의 종류

▪ 소음·진동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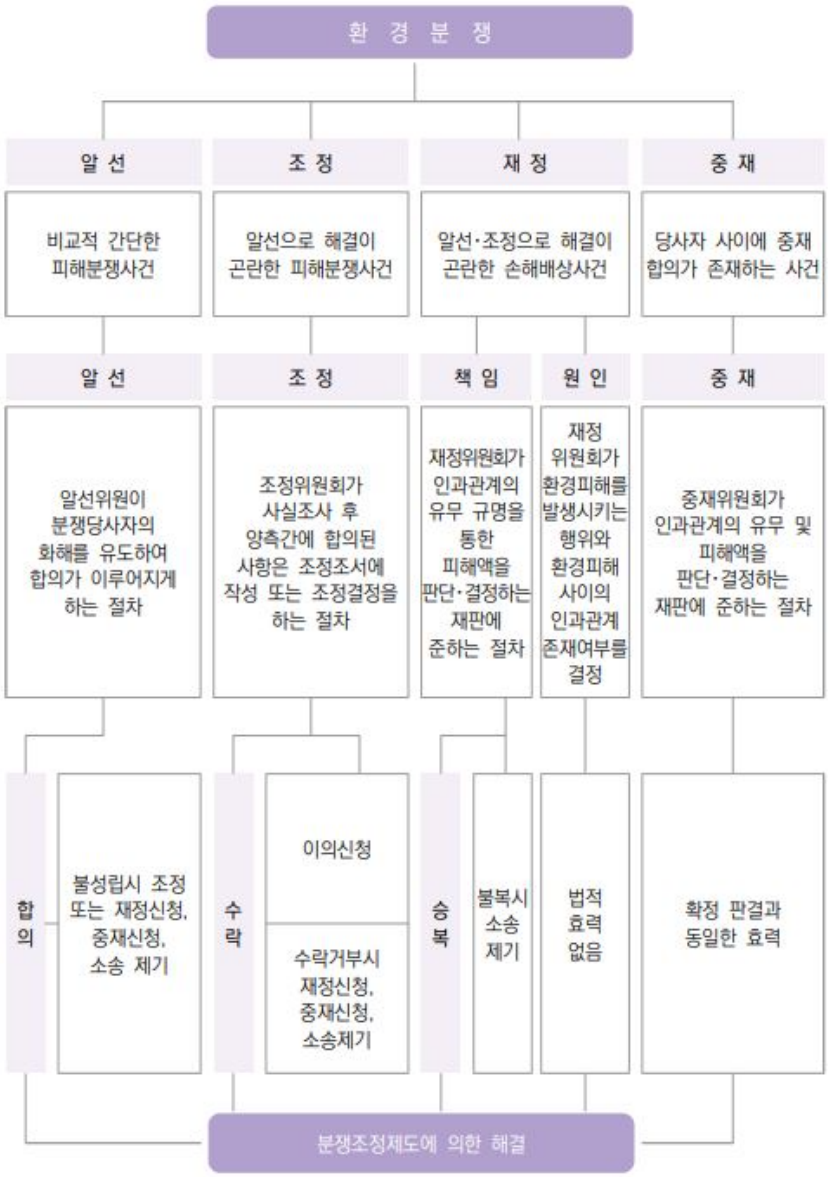
종류	대상
환경분쟁 조정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사업활동이나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소음·진동, 진동이 그 원인 중의 하나로 되는 지반침하(광물 채굴로 인한 지반침하는 제외)로 인한 건강상·재산상·정신상에 관한 피해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2항제6호)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환경분쟁 조정(調整)

환경분쟁 조정의 종류 및 효력

▪ 환경분쟁 조정의 종류에는 알선, 조정(調停), 재정(책임재정·원인재정), 중재가 있으며, 그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분쟁 조정 종류 및 효력



(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2022년 환경분쟁조정사례집 주요사례』, 11쪽)

환경분쟁 조정의 절차

▪ 소음·진동 피해에 따라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할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관할 사무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분쟁 조정사무 중 다음의 사항을 관할하고, 그 외의 사항은 지방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관할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제2항제1호 및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항).

1. 조정목적의 가액(이하 "조정가액"이라 함)이 1억원을 초과하는 분쟁의 재정(아래 5. 에 따른 재정은 제외) 및

중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

3.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친 분쟁의 조정

4.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직권조정(職權調停)

5. 원인재정(「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호)과 원인재정 이후 신청된 분쟁의 조정(「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

6. 지방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환경분쟁의 조정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환경분쟁 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분쟁 조정절차



[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 통합지원 서비스(www.ehtis.or.kr/onestop) 제도안내-환경분쟁조정-진행절차]

※ 풍력발전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중앙환조 20-3-241, 20-3-242)

- **사건:** 전남 군 면 로, 로 등에 거주하는 등 78명, 등 85명이 인근 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으로 인하여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 발전(주)을 상대로 총 244,5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 **조정결과**

(인과관계 검토) 기준 주파수인 80Hz에서 실측소음도 또는 평가소음도가 최대 85dB(Z)(241호 사건지역)로, 최대 87dB(Z)(242호 사건지역)로 나타나 저주파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45dB(Z)을 초과하고, 다른 주파수(12.5~63Hz)에서도 각 주파수별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두 사건지역 모두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의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됨

(배상액)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20-3-241호 사건은 신청인 1인당 432,000원~2,311,200원으로, 20-3-242호 사건은 신청인 1인당 216,000원~2,311,200원으로 함

※ 철도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중앙환조 22-3-100)

- **사건:** 경북 시 길 일원에 거주하는 신청인 등 6명이 인근 철도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2018.2월부터 2021.8월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금 4,2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 **조정결과**

(인과관계 검토: 소음)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평가소음도가 최대 81dB(A)로 나타나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65dB(A)을 초과하므로,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됨

(인과관계 검토: 진동) 건설장비 사용 시 평가진동도가 최대 61dB(V)로 나타나 진동피해 인과 관계 검토기준 65dB(V)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음

(배상범위)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은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dB(A)을 초과하는 등 5명에 대해 평가소음도, 이격거리,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410,000원을 배상함

(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2022년 환경분쟁조정사례집』 참조)

※ 환경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환경분쟁 해결』 콘텐츠 및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홈페이지(https://ecc.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의 효력

▪ ①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함)의 조정결과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②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함)의 조정결과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제6항 본문 및 제80조제2항).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의 절차

▪ 층간소음 피해에 따라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제1항 및 제71조제2항제6호).

※ 공동주택관리 분쟁쟁조정위원회 관할 업무

-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그 외의 사항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72조제1항·제2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2조의2).

1. 둘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걸친 분쟁
2. 시·군·구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시·군·구 관할 분쟁
3. 분쟁당사자가 쌍방이 합의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분쟁
4.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
5.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이송한 분쟁

▪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 절차



[출처: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사이트(https://namc.molit.go.kr) 분쟁 조정 안내-분쟁조정 절차]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 해결 사례**

(분쟁 신청) 아파트 아래층에 거주하고 있는 신청인은 위층세대 손주의 잦은 방문으로 아이뛰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문을 쾅 닫는 소음 등으로 당사자간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실질적인 개선은 없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호소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함

(분쟁 해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양 당사자의 의견을 주의깊게 청취하고 소음일지를 작성하는 등 사건 경위를 세밀하게 분석함.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도중 신청인의 항의로 피신청인 세대의 사위와 언쟁으로 인해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진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됨

이를 바탕으로 조사관은 당사자들의 핵심 요구사항을 상대방에서 수용하게끔 설득하여, 윗층세대는 손주 방문시 소음저감용 매트 사전 설치, 층간소음 예방교육 실시 및 슬리퍼 착용등으로 지속적으로 소음저감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하고, 아래층 세대는 공동주택 특성상 완벽한 소음차단은 불가함을 인지하고, 분쟁발생시 관리사무소의 중재를 요청하도록 약속함. 다만, 불가피하게 직접소통을 할 경우에는 소통창구를 신청인과 피신청인으로 일원화하기로 약속함.

이후 양 당사자는 약 2주간의 숙려기간을 거쳐 합의서를 수용함으로써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층간소음분쟁이 사전합의로 해결될 수 있었음

[출처: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https://namc.molit.go.kr/)-법령·정보-조정사례 참조]

※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https://namc.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2. 환경쟁송

환경쟁송 제도

소송의 제기

▪ 소음·진동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그 밖에 손해배상청구 또는 유지청구 등의 민사소송을 통해서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절차로서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되고, 재판기관인 법원에 의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행정기관이 하는 **행정심판**과 구별됩니다[출처: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포털(https://ecfs.scourt.go.kr), 사건유형별 절차안내-행정-행정소송의 개요 참조].

소송의 종류 및 방법

행정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인·허가, 개선명령, 조치 명령 등)이나 부작위로 소음·진동의 피해를 입은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1조, 제3조 및 제5조 참조).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

▪ 행정심판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심판 절차



[출처: 온라인행정심판 사이트(https://www.simpan.go.kr)-행정심판안내-행정심판이란-행정심판절차]

※ 규제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명령 취소청구 행정심판례[국민권익위원회 울산행심2013-82, 2013. 11. 28.]

동일건물일 경우 야간(22:00~05:00)에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45dB(A)이나, 이 사건 업소에 대하여 소음 측정한 결과 54(53)dB(A)로 나타나 관계법령에 의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처분인 '규제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명령'은 소음을 발생하는 기계나 장비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 사건 업소의 음향장비 등에 의한 음악소음이 주 소음원으로 나이트 영업특성상 음악은 필수사항인데 음향장비를 전혀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나이트 영업허가를 득하기 전 방음공사를 위하여 2013. 1. 총 공사비 155백만 원을 들여 광역시 구 소재 ' E.N.G 토탈 디자인' 이라는 업체에 의뢰하여 공사하였고, 같은 해 5말경부터 6월초까지 이 사건 1층에 대하여 540만 원을 부담하여 방음공사를 시행한 점, 이 사건 건물주가 위 이 을 상대로 부동산명도가처분 소를 제기하여 2013. 11. 중순경 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1층에 대하여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이 이루어져 현재 비워져 있는 상태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민원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제재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과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행정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사항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 행정심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소음·진동의 피해를 입은 경우 법원에 행정소송(항고소송: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조 및 제4조 참조).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나,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재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 무효등확인소송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38조제1항 참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재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38조제2항, 제20조제1항 및 제2항).

행정소송 절차



[출처: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포털(https://ecfs.scourt.go.kr), 사건유형별 절차안내-행정-행정소송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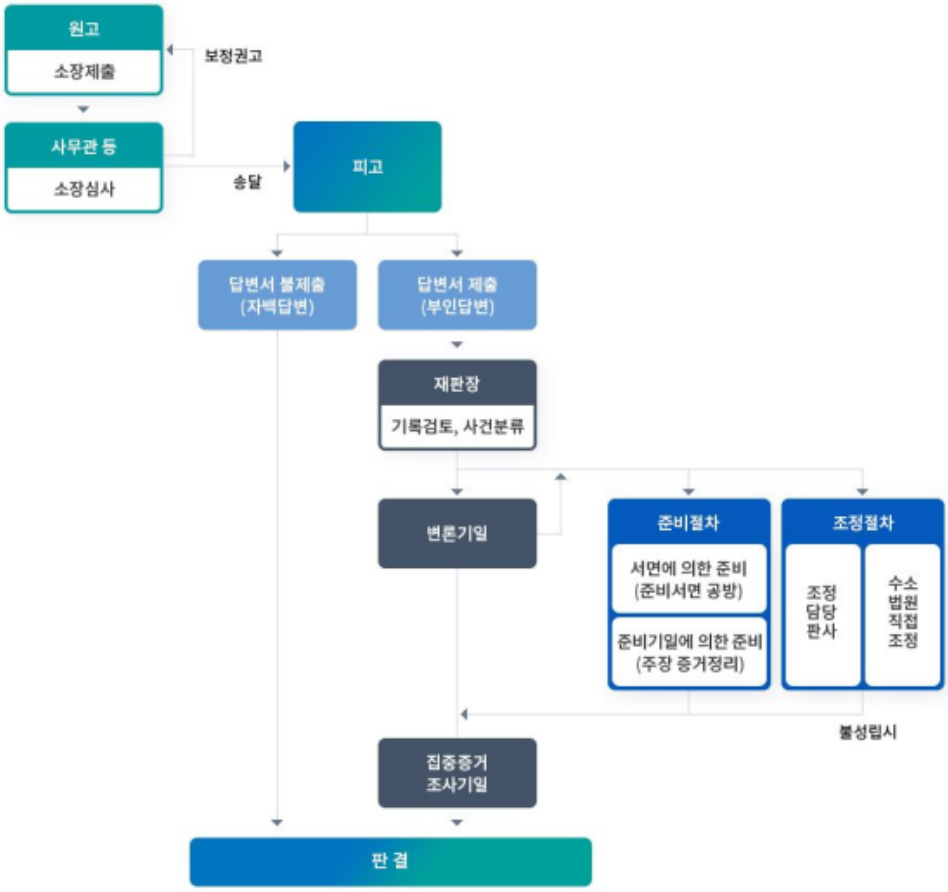
※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행정소송』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 소음·진동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해당 피해를 발생시킨 가해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상 피해 뿐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제1항 참조).

▪ 소음·진동으로 소유권을 방해받는 등의 피해가 있는 경우 해당 소음·진동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14조 참조).

민사소송 절차



[출처: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포털(https://ecfs.scourt.go.kr)-사건유형별 절차안내-민사-민사소송의 개요]

※ 소음·진동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례(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321 판결**)**

철도를 설치하고 보존·관리하는 자는 설치 또는 보존·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는 해당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해당 공작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자체에 물리적·외형적 결함이 있거나 필요한 물적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작물을 본래의 목적 등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이하 '참을 한도'라고 한다)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됨.

이 경우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는지는 구체적으로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종류와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 토지가 있는 지역의 특성과 용도, 토지이용의 선후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민사소송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나홀로 민사소송』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소음·진동 규제

2.1. 공동주택 소음

2.1.1. 층간소음

층간소음의 기준

규제 대상

▪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 포함)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

[사람의 목소리]

Q1. 인접 세대에서 떠드는 소리에 층간소음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A1. 대화나 싸우는 소리, 고성방가 등 사람의 육성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층간소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지나치게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리모델링 소음]

Q2. 공동주택 인테리어 리모델링으로 인한 공사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에 해당할까요?

A2. 공동주택 리모델링(인테리어) 공사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 유지를 위해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관리규약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관리주체는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입주민의 권익 침해 및 생활 불편이 과도하지 않도록 관리규약 등을 통하여 적절히 조치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소음·진동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 180쪽 및 182쪽 참조]

규제 기준

▪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다음의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단위:dB(A)]	
		주간(06:00~22:00)	야간(22:00~06:00)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Leq)	39	34
	최고소음도(Lmax)	57	52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Leq)	45	40

층간소음 예방 조치

공동주택의 경계벽

▪ 공동주택 각 세대간의 경계벽 및 공동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간의 경계벽은 내화구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

경계벽 건설기준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타르, 회반죽, 석고플라스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가 15cm 이상인 것
2.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타르, 회반죽, 석고플라스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가 20cm 이상인 것
3. 조립식주택부재인 콘크리트판으로서 그 두께가 12cm 이상인 것
4. 1.에서부터 3.까지의 구조 외에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차음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하는 구조인 것

공동주택의 바닥구조

▪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층간바닥 건설기준

1.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mm[라멘구조(보와 기둥을 통해서 내력이 전달되는 구조를 말함)의 공동주택은 150mm] 이상으로 할 것[공업화주택 또는 목구조(주요 구조부를 목재 또는 목재제품으로 구성하는 구조를 말함) 공동주택의 층간바닥은 예외로 함]
2. 각 층간 바닥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바닥의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함) 및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함)이 각각 49dB 이하인 성능을 말함]을 갖춘 구조일 것. 다만, 다음의 층간바닥은 예외로 함.

가. 라멘구조의 공동주택의 층간바닥

나. 위 가.의 공동주택 외의 공동주택 중 발코니, 현관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의2에서 정하는 부분의 층간바닥

※ 공동주택 화장실 저소음배관 설치

• 주택의 화장실에 설치하는 배수용 배관은 층상배관공법(배관을 해당 층의 바닥 슬래브 위에 설치하는 공법) 또는 층하배관공법(배관을 바닥 슬래브 아래에 설치하여 아래층 세대 천장으로 노출시키는 공법)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층하배관공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반용 경질(단단한 재질) 염화비닐관을 설치하는 경우보다 같은 측정조건에서 5dB 이상 소음 차단성능이 있는 저소음형 배관을 사용해야 합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제2항제2호).

층간소음 발생 시 조치

관리주체의 조치 등

▪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조정 신청

▪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공동주택 내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 참조).

※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층간소음 민원 청취 및 사실관계 확인, 분쟁의 자율적인 중재 및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7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7항 참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2).

층간소음 전문기관 이용

▪ 층간소음으로 공동주택 입주자 간에 갈등이 발생한 경우 층간소음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을 통해 "① 전화상담, ② 방문상담, ③ 소음측정"의 순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5조, 제6조 및 제7조 참조).

· **(전화상담)** ☎ 1661-2642 / 운영시간: 평일 09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

· **(방문상담)** 층간소음 전문기관은 방문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층간소음 현장에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여 조정방안 등을 제시하게 됩니다(「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6조제5항 및 제6항).

· **(소음측정)** 방문상담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 소음측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

√ 소음측정은 1개 지점 이상에서 1시간 이상 24시간 이하로 연속하여 측정합니다(「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 참조).

※ 방문상담, 소음측정의 신청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콜센터(☎ 1661-2642) 또는 인터넷(https://floor.noiseinfo.or.kr)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2.2. 생활 주변 소음·진동

2.2.1. 생활(공사장 및 사업장 등)소음·진동

생활(공사장 및 사업장 등)소음·진동의 기준

규제 대상

▪ 생활소음·진동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을 말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1항).

생활소음·진동의 범위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1. 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
2. 소음·진동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3. 산업단지, 전용공업지역, 자유무역지역 등(「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4.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사업장의 의미]

Q1. 「소음·진동관리법」상 사업장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1.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 사업장이란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으로 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리행위를 하는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 또는 '하나의 활동주체가 유기적 관련 아래 사회적 활동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라면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유치원의 경우]

Q2.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에 유치원(비영리기관이며,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 교부)이 해당되나요?

A2.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4호의 사업장이란, 사업자 등록대상에 해당되고 주로 영리행위를 하는 사업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영리 기관인 유치원은 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소음·진동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 89쪽 및 97쪽 참조]

규제 기준

▪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및 별표 8).

1.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dB(A)]

대상 지역	시간대별 소음원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확성기	옥외설치	60이하	65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기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사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그 밖의 지역	확성기	옥외설치	65 이하	7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기타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사장		65 이하	70 이하	50 이하

2. 생활진동 규제기준

[단위 : dB(V)]

시간대별 대상 지역	주간 (06:00~22:00)	심야 (22:00~06: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65 이하	60 이하
그 밖의 지역	70 이하	65 이하

위반 시 제재

▪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는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제1항).

▹ 위의 작업시간 조정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제4호).

▪ 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제4항).

▹ 위의 사용금지, 공사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57조제4호).

▪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발생시킨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제3항제2호의2).

특정공사의 신고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1항).

특정공사의 범위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에 규정된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함

1. 연면적이 1천㎡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2.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천㎥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3. 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토공사(土工事)·정지공사(整地工事)
4. 총연장이 200㎡ 이상 또는 굴착(땅파기) 토사량의 합계가 200㎥ 이상인 굴정(구멍뚫기)공사
5. 학교 또는 종합병원 주변 등(「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다만,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의 기계·장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저소음·저진동을 발생한다고 인정하는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 규제 제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제외함

방음시설의 설치

▪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5항제1호 본문).

방음시설 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 및 별표 10)

1. 방음벽시설 전후의 소음도 차이(삽입손실)는 최소 7dB 이상 되어야 하며, 높이는 3m 이상 되어야 함
2. 공사장 인접지역에 고층건물 등이 위치하고 있어, 방음벽시설로 인한 소음의 반사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흡음형 방음벽시설을 설치해야 함
3. 방음벽시설에는 방음판의 파손, 도장부의 손상 등이 없어야 함
4. 방음벽시설의 기초부와 방음판·지주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하여 소음의 누출을 방지해야 함

▪ 다만, 공사현장의 특성 등으로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7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5항제1호 단서).

저감대책 수립·시행

▪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줄이기 위해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5항제2호).

저감대책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6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8항)

1.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공법과 건설기계의 사용
2. 이동식 방음벽시설이나 부분 방음시설의 사용
3. 소음발생 행위의 분산과 건설기계 사용의 최소화를 통한 소음 저감
4. 휴일 작업중지와 작업시간의 조정

위반 시 제재

▪ ① 특정공사를 시행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②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기준에 맞지 않은 방음시설을 설치한 자, ③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제3항제2호의3, 제2호의4 및 제3호).

2.2.2. 이동소음

이동소음의 기준

규제 대상

▪ "이동소음"이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동소음의 원인을 일으키는 기계·기구(이하 "이동소음원"이라 함)로 인한 소음을 말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제1항 참조).

이동소음원
(「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제2항,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및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 제2조)

1. 이동하며 영업이나 홍보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확성기
2.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3.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4. 배기소음 95 데시벨(dB)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고시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동소음원으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제1항).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하면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고, 표지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제3항).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사례**[「이동소음 규제지역 및 사용금지 대상 지정 변경 고시」(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3-154호)]

1. 이동소음 규제지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 녹지지역

나.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경계선에서 50m 이내의 지역

다. 「도서관법」 제4조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에서 50m 이내의 지역

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지경계선에서 50m 이내의 지역

2. 사용금지 대상 이동소음원

가. 이동하며 영업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확성기

나.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다.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3. 이동소음원의 규제내용

- 규제지역 내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전일 금지하되,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원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이용승인을 받은 공연, 행사, 전시회 등의 이동소음원은 사용을 허용함

4. 배기소음 95데시벨(dB)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규제

가. 규제내용: 배기소음 95데시벨(dB)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규제 대상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고, 규제지역 및 규제시간 내 사용을 금지함

나. 규제지역: 인왕산로 3부터 북악산로 267(북악팔각정)까지

다. 규제시간: 21:00부터 익일 06:00까지

위반 시 제재

▪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제3항제5호).

[버스킹 공연 소음]

Q. 공원, 광장 등 공공장소의 버스킹 공연 때문에 너무 시끄러운데요, 규제가 가능한가요?

A. 공공장소 공연시 사용하는 확성기(스피커)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이동소음원의 규제대상에 해당됩니다.

관할 지자체장은 이동소음의 원인을 일으키는 기계·기구(이동소음원) 등에 의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사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음향기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하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의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21호(인근소란 등)에따라 규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출처: 『소음·진동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 118쪽 참조]

2.2.3. 집회·시위소음 및 선거소음

집회 또는 시위 시 소음

규제 대상

▪ 집회 또는 시위 시 소음은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기구(이하 "확성기 등"이라 함)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참조).

규제 기준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위반하는 확성기 등의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2).

[단위:dB(A)]

소음도 구분		대상 지역	시간대		
			주간 (07:00~해지기 전)	야간 (해진 후~24:00)	심야 (00:00~07:00)
대상 소음도	등가소음도(Leq)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60 이하	50 이하	45 이하
		공공도서관	60 이하	55 이하	
		그 밖의 지역	70 이하	60 이하	
	최고소음도(Lmax)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80 이하	70 이하	65 이하
		공공도서관	80 이하	75 이하	
		그 밖의 지역	90 이하		

확성기 등 소음 발생 시 조치

▪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위의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위반 시 제재

▪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호).

선거 운동 시 소음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 사용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해 각 선거에서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79조제3항).

▹ 다만, 4개 이상 동시선거에서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216조제1항 전단).

▪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고, 이 경우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79조제4항).

▪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할 때 확성나발의 수는 1개를 넘을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79조제5항).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02조제1항 단서).

> Q. 선거 후보자 연설 및 홍보를 위한 옥외 확성기를 사용하는 경우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규제를 받나요?
>
> A. 아니요.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생활소음 규제대상인 확성기 소음에 대해 규제하고 있으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신고한 확성기 사용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됩니다.
>
> [출처: 『소음·진동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 116쪽 참조]

확성장치 소음기준

▪ 확성장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소음기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79조제8항).

확성장치 종류	소음 제한기준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정격출력 3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27dB (다만,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또는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40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50dB)
휴대용 확성장치	정격출력 30와트 (다만,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또는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3킬로와트)

위반 시 제재

▪ 위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 사용 규정(「공직선거법」 제79조제3항부터 제5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5항제8호).

▪ 위의 규정(「공직선거법」 제216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4개 이상 동시선거에서 확성장치나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2항제4호).

▪ 위의 확성장치 사용 시간(「공직선거법」 제102조제1항 단서)을 위반하여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개최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3항제1호차목).

▪ 위의 규정(「공직선거법」 제79조제8항)을 소음기준을 초과한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직선거법」 제261조제3항제3호의2).

2.3. 교통 소음·진동

2.3.1. 교통소음·진동

교통소음·진동의 기준

규제 대상

▪ 교통소음·진동은 기차·자동차·전차·도로 및 철도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말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8호 및 제26조 참조).

규제 기준

▪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의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6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별표 11).

대상지역	구분		한도	
			주간 (06:00~22:00)	야간 (22:00~06:00)
① 주거지역 ② 녹지지역 ③ 보전관리지역 ④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⑤ 자연환경보전지역 ⑥ 학교·병원·공공도서관 및 입소규모 100명 이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 지역	소음 LeqdB(A)	도로	68	58
		철도	70	60
	진동 dB(V)	도로	65	60
		철도	65	60
⑦ 상업지역 ⑧ 공업지역 ⑨ 농림지역 ⑩ 관리지역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및 관리지역 중 위 ①부터 ⑥까지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지역 ⑪ 미고시지역	소음 LeqdB(A)	도로	73	63
		철도	75	65
	진동 dB(V)	도로	70	65
		철도	70	65

[버스 정류장 공회전 소음]

Q. 버스 정류장에서 발생하는 버스 공회전 소음도 규제가 가능한가요?

A. 정류장(정류시설)은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로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6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교통기관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관리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지역을 「소음·진동관리법」 제27조에 따른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소음·진동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 134쪽 참조]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의 지정 및 해제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함)는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7조제1항).

▪ 다만,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교통 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지 않거나 초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교통 소음·진동 관리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7조제5항).

자동차 운행의 규제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을 통행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속도의 제한·우회 등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시·도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시·도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8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는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및 철도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이 침해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9조제1항).

▸ 도로(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는 제외) 중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학교 및 공동주택의 주변 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에 대해서도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고속철도 증설에 따른 소음]

Q1. 주택단지 인근에 고속철도 증설로 소음, 진동 피해가 예상되는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A1.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철도소음·진동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는 철도 등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교통 소음·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는 지정된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 내 철도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이 침해된다고 인정하면 스스로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출처: 『소음·진동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 148쪽 참조]

[고속도로 옆 아파트 건설에 따른 소음]

Q2. 고속도로 바로 옆의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자동차 소음 때문에 힘듭니다. 심지어 밤에는 소음 때문에 수면에 지장을 받고 있어요. 이런 경우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2.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되,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방음림(소음막이숲)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 본문).

다만, 공동주택이 도시지역 또는 교통소음·진동 관리 지역에 건축되는 경우로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의 6층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는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지 않아도 됩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 단서).

따라서 아파트를 건설한 회사에 방음벽 등의 소음방지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3.2. 자동차 소음·진동

자동차 운행 시 소음허용기준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해야 하며,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여서는 안 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제1항).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되는 운행차의 소음허용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 및 별표 13 제2호다목)

소음항목 / 자동차 종류		배기소음(dB(A))	경적소음(dB(A))
경자동차		100 이하	110 이하
승용자동차	소형	100 이하	110 이하
	중형	100 이하	110 이하
	중대형	100 이하	112 이하
	대형	105 이하	112 이하
화물자동차	소형	100 이하	110 이하
	중형	100 이하	110 이하
	대형	105 이하	112 이하
이륜자동차		105 이하	110 이하

※ "배기소음"이란 배기가스가 배기구로 배출될 때 발생되는 소음을 말하며(「소음·진동관리법」 제31조제3항 참조), 2006년 1월 1일 이전에 제작된 운행차에 대한 소음허용기준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포상금 지급**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음기·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46조의2).

이륜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

▪ ① 2023. 7. 1. 이후 제작되는 이륜자동차, 또는 2023. 7. 1. 이전에 제작됐으나 ② 2023. 7. 1. 이후 최초로 판매되거나 ③ 2023. 7. 1. 이후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소음방지 장치의 튜닝을 한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를 제작할 때 인증·변경인증을 받은 배기소음 결과 값보다 5데시벨[dB(A)]을 초과하지 않도록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해야 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제2항 및 부칙(제19150호, 2022. 12. 30.) 제3조].

▪ 따라서, 이륜자동차를 제작할 때 인증·변경인증을 받은 배기소음 결과 값에 5데시벨[dB(A)]을 더한 값이 위의 이륜자동차 배기소음허용기준보다 더 엄격한(소음측정값이 낮은) 경우에는 그 값을 배기소음허용기준으로 적용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 비고).

※ **이륜자동차 배기소음 결과 값 표시**

· 이륜자동차를 제작하려는 자는 이륜자동차에 해당 인증·변경인증의 배기소음 결과 값을 이륜자동차의 차체 또는 차대의 보기 쉬운 곳에 표지판을 이용하여 표시하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정해야 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31조제3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제2항).

※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자신이 보유한 이륜자동차에 적용되는 배기소음허용기준을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민원서비스-이륜차 소음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위의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위반한 운행차 소유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제3항제6호).

운행차 점검 및 검사

운행차의 수시점검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도로 또는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등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에서 규정하는 자동차는 수시점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36조제1항).

▹ 운행차의 소음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렸는지 여부
-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

▪ 자동차 운전자는 수시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36조제3항).

운행차의 정기검사

▪ 자동차의 소유자는 정기검사(「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 및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를 받을 때에 다음의 사항 모두에 대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제1항).

- 운행차의 소음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렸는지 여부
-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

개선명령

▪ 운행차에 대해 수시점검 결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는 개선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개선에 필요한 기간에 그 자동차의 사용정지명령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

- 운행차의 소음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린 경우
-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경우

▪ 위의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확인검사대행자로부터 개선 결과를 확인 받은 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등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38조제3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

위반 시 제재

▪ 자동차 운행자가 수시점검에 협조할 의무를 위반하여 점검에 따르지 않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위의 개선명령 또는 사용정지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제5호 및 제6호).

▪ 개선명령을 받고 개선 결과 보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제3항제7호).

2.3.3. 항공기 소음

항공기 소음의 기준

항공기 소음의 한도

▪ 항공기 소음의 한도는 다음의 구분과 같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39조제1항,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

구분	소음한도기준
공항인근지역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제1종 구역 및 제2종 구역)	가중등가소음도[LdendB(A)] 75
그 밖의 지역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제3종 구역)	가중등가소음도[LdendB(A)] 61

항공기 소음 방지 조치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항공기 소음이 항공기 소음의 한도를 초과하여 공항 주변의 생활환경이 매우 손상된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방음시설의 설치나 그 밖에 항공기 소음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39조제1항).

공항(항공기)소음 피해대책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 공항에 이륙·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합니다(「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

> ※ 소음대책지역은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http://airportnoise.center)-소음대책사업-대상지역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항소음대책사업의 시행

▪ 공항시설관리자(이하 “시설관리자”라 함) 또는 공항개발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함)는 공항소음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항소음대책사업을 시행합니다(「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조제1항).

공항소음대책사업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2.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시설관리자로 한정) 3. 다음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시설관리자로 한정) ①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②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민 주거용 시설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 ③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老幼者)시설 4.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사업 5. 손실보상 및 토지 등의 매수 6. 그 밖에 공항소음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소음대책지역 건축물에 대한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학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만 해당)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해 다음의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제18조제5항,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별표 1).

구분	내용
주민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회관, 마을회관, 양로시설, 경로당, 아동상담소, 아동복지관, 어린이집, 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영양취약계층 급식비 지원 (체육사업) 체육공원 등 체육 관련 시설 또는 어린이 놀이터의 설치 (교육문화사업) 도서관 또는 교육·문화 관련 시설의 설치
소득증대사업	(공동작업장 사업) 공동이용을 위한 소규모 공용 창고, 구판장의 설치, 지역대표 작물의 공동작업장 설치 또는 공동 육묘장 퇴비시설 설치 (공동영농사업) 농로, 농업용수로, 농업용 양수장, 농작물 재배시설의 설치 또는 공동 농기계 구입비 지원 (일자리 창출 사업) 취약계층, 여성, 노인 또는 청년 등을 위한 일자리창출 사업
그 밖의 사업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세제 지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음대책지역의 주민에게 「지방세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 **※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
>
>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소음대책지역에 해당하여 소음 피해 보상을 받는 대상인지 여부와 보상 절차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은 군소음 포털(https://mnoise.m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 공장 소음·진동

2.4.1. 공장(배출시설) 소음·진동

공장 소음·진동 기준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

▪ 소음·진동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함)을 설치한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공장을 말하며, 공항시설 안의 항공기 정비공장은 제외)에서 나오는 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7호, 제7조제1항,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별표 5).

1.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

[단위 : dB(A)]

대상지역	시간대별		
	낮 (06:00~18:00)	저녁 (18:00~24:00)	밤 (24:00~06:00)
가.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만 해당),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50 이하	45 이하	40 이하
나.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제외)	55 이하	50 이하	45 이하
다.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지역 중 가.와 라.를 제외한 그 밖의 지역	60 이하	55 이하	50 이하

라.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준공업지역, 관리지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	65 이하	60 이하	55 이하
마.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70 이하	65 이하	60 이하

2. 공장진동 배출허용기준

[단위 : dB(V)]

대상 지역	시간대별	
	낮 (06:00~22:00)	밤 (22:00~06:00)
가.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60 이하	55 이하
나.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지역 중 가.와 다.를 제외한 그 밖의 지역	65 이하	60 이하
다.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준공업지역, 관리지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	70 이하	65 이하
라.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75 이하	70 이하

※ **"소음·진동 배출시설"**이란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공장의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로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말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설치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및 허가

▪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 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 단서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

-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학교, 공동주택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 주거지역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 해당)
- 요양병원 중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 어린이집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 배출시설의 신고를 한 자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해야 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2항,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별표 6).

- 배출시설의 규모를 50% 이상(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규모를 증설하는 누계를 말함) 증설하는 경우
-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배출시설의 전부를 폐쇄하는 경우

> ※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제3항제1호).

소음·진동 배출사업자의 준수의무

방지시설의 설치

▪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대한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함)가 그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공장으로부터 나오는 소음·진동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해 소음·진동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함)을 설치해야 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9조 본문).

소음·진동방지시설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4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 2 제1호)

소음방지시설	진동방지시설
1) 소음기 2) 방음덮개시설 3) 방음창 및 방음실시설 4) 방음외피시설 5) 방음벽시설 6) 방음터널시설 7) 방음림 및 방음언덕 8) 흡음장치 및 시설 9) 1)부터 8)까지의 규정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	1) 탄성지지시설 및 제진시설 2) 방진구시설 3) 배관진동 절연장치 및 시설 4) 1)부터 3)까지의 규정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자나 공장이 밀집된 지역의 사업자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을 공동으로 방지하기 위해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사업자는 공장별로 그 공장의 소음·진동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봅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12조제1항).

배출허용기준의 준수의무

▪ 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끝내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때에는 가동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14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본문).

▪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연간 조업일수가 90일 이내인 사업장으로서 가동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조업이 끝나 오염도검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단서).

> ※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지 않은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제3항제2호).

환경기술인의 임명

▪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환경기술인을 임명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아도 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19조제1항).

> ※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제2항제1호).

위반 시 제재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개선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

▪ 조업 중인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는 그 소음·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는 데에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함)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15조).

▪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16조제1항 전단).

> ※ 위의 조업정지명령 등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57조제3호).

설치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명령 등

▪ 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가 취소(신고 대상 시설의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말함)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고, 아래 1.의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명령을 받게 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17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2항)

3. 소음·진동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소음·진동관리법」 제9조)

4.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소음·진동관리법」 제14조)

5.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소음·진동관리법」 제16조)

6.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은 경우(「소음·진동관리법」 제19조)

※ 위의 조업정지명령 등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57조제3호).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그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18조 본문).

▪ 다만, 해당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그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되는 장소이면 그 배출시설은 폐쇄명령을 받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18조 단서).

미허가 또는 미신고된 배출시설 등에 대한 제재

▪ 허가를 받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자 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57조제1호 및 제2호).

▪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제1호).